#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12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1.

발 의 자:정춘생·이해민·차규근

강경숙 · 김준형 · 서왕진

황운하 • 신장식 • 김선민

김재원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시·도의회에도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·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·도의회 소속으로 시·도의회 예산정책처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4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제12절에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4조의2(시·도의회예산정책처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·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·도의회 소속으로 시·도의회예산정책처를 둔다.
  - ② 시 · 도의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지방공무원을 둔다.
  - ③ 처장은 시·도의회의 의장이 시·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.
  -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·도의회예산정책처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04조의2(시·도의회예산정책
	처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
	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
	연구분석・평가하고 의정활동
	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·도의
	회 소속으로 시·도의회예산정
	책처를 둔다.
	② 시・도의회예산정책처에 처
	장 1명과 필요한 지방공무원을
	<u>둔다.</u>
	③ 처장은 시·도의회의 의장
	이 시 ·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
	<u>임면한다.</u>
	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
	시 · 도의회예산정책처에 관하
	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
	<u> 정한다.</u>